

- 종합시험은 과목당 4회까지 응시가능
- 인정학점 과목은 단순 학점인정으로 종합시험 과목으로 신청할 수 없음

2)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 내규 및 해당학과 내규 참조

- 제2외국어(사학과, 영어영문학과 등-응시자 확인요망)
- 시험횟수 제한 없음

(단 1학기에 1회만 시행함. 2025-2학기 불합격 시 2026-1학기에 시험(면제) 신청 가능)

2. **시험 신청방법:** 학생: 통합정보시스템 → 학위 → 자격시험관리 → (외국어시험·종합시험) 신청

3. **신청한 시험과목 수정방법:** 학생 → 학과 교학팀으로 요청 → 학과에서 일반대학원 메일을 통해 수정 요청(grad@hallym.ac.kr)

논문제출자격시험 관련 규정

1.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제 5 장 학위논문지도 및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제 18 조(학위논문지도) 각 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위청구논문 작성 지도를 위한 세부사항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 19 조 (종류 및 합격기준)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하며 매 학기초 30일 이내에 각 대학원별로 시행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으로 하며, 과목당 합격을 인정한다.

③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은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제 20 조 (외국어시험) ① 학위과정별 1개 학기 이상 정규등록을 마친 학생은 학위청구논문 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②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원칙으로 하나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와 제2외국어로 한다. 단, 제2외국어 시험에 대하여는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행여부 및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외국어시험의 출제, 채점 등의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내규로 정한다.

제 21 조 (종합시험) ① 각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자격을 위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단, 학.석사연계과정 학생은 2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대학원은 18학점 이상을, 특수대학원은 16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②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3학기 이상의 정규등록을 한 학생으로서 27학점 이상을 취득하고 총 평균평점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③ 각 대학원 학위과정별 종합시험 과목 및 시행방법은 각 대학원 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과 또는 전공별로 정하여 실시한다.

2.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 시행내규(최종개정 2021. 2. 19)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학원학칙 제32조 제3항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5장에 규정한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논문제출 자격시험) 논문제출 자격시험은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으로 한다.

1. 외국어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1과목으로 한다. 다만, 학과 또는 전공별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영어를 포함하여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나. 박사학위과정

박사학위 청구논문제출을 위한 외국어시험은 영어를 필수로 하고, 제2외국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학과 또는 전공에서 시험과목을 지정할 경우에는 편의에 따라 불어, 독어, 중국어, 일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및 한문 중에서 1과목 이상을 선택하여 지정할 수 있다.

다. 외국인 학생

외국인학생은 한국어를 포함하여 '가', '나'에 명시된 자국어 이외의 외국어 중에서 학생이 선택하여 응시한다.

라. 외국어시험 면제 기준

1) 아래 각호의 1의 기준 이상을 충족한 학생에 대해 영어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가) TOEIC 700점 이상

나) TOEFL(IBT) 80점 이상 * CBT 213이상, PBT 550이상

다) TEPS 600점 이상(New TEPS 326점 이상)

라) IELTS 5.5 이상

2)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이 4급 이상일 경우 추가로 외국어시험을 면제 할 수 있다.

3) 1)~2)항의 외국어시험 면제신청시 해당 어학성적은 외국어시험 응시일 기준 2년 이내 성적이어야 한다.

2. 종합시험

가. 석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반드시 2과목이상을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나. 박사학위과정: 학과 또는 전공별로 지정된 교과목 중에서 3과목이상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한다.

다. 종합시험 대체기준: 종합시험 응시자격을 갖춘 학생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한 학생에 한하여 대체한다.

1) 인문사회계열: KCI 등재지 이상 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단, SCIE급은 공동저자 포함

2) 자연공학의학계열: SCIE급 이상 제1저자로 게재한 경우 단, 인문사회계열 적용이 필요한 스쿨 및 학과(협동과정)는 학사위원회 심의 후 대학원장이 정한다.

라. 상기 종합시험 기준 이외 사항은 스쿨 및 학과, 협동과정 내규에 따른다.

제 3 조 (응시절차)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학사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제 4 조 (시험일자) 외국어시험은 매학기초 30일 이내에 대학원장이 정하여 시행하고 종합시험은 스쿨, 학과(협동과정)별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단, 국가재난 상황 발생 등 특이 사항 발생 시 대학원장이 별도 기간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 5 조 (출제위원 위촉) ① 외국어시험 출제위원은 분야별 학과별 1인 또는 2인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② 종합시험의 출제위원은 해당학과 담당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 중 1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학과장의 추천에 의하여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제 6 조 (시험 출제 방법) 외국어시험과 종합시험은 필답시험으로 한다.

1. 외국어시험

외국어시험은 외국어관련 학과 교수가 출제하는 기초공통분야와 관련학과별로 출제하는 전공분야로 구분한다. 다만, 영어를 제외한 기타 외국어시험은 전공분야만 출제할 수 있다.

2. 종합시험

종합시험과목의 범위와 내용은 응시자의 이수과목을 참작하여 관련학과별로 출제한다.

제 7 조 (시험시간 및 배점) ① 기초공통분야와 전공분야로 출제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90분으로 하고, 배점은 기초공통분야 35점, 전공분야 65점으로 모두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전공분야만 출제하는 외국어시험의 시간은 60분으로 하고,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③ 종합시험 시간은 과목당 60분으로 하고, 배점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한다.

제 8 조 (응시회수) ① 외국어시험은 횟수에 관계없이 응시할 수 있다.

② 종합시험은 4회까지 응시할 수 있다.